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16189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16189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8나1226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현

담당변호사 김재승, 박병선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이해리, 한영환

판결 선고2020. 10. 29.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20. 2. 6. 선고 (전주)2018나122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합자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3. 2.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으로부터 F 건설공사 중 토목과 부대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3. 2. 14. B로부터 위 토목과 부대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34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2. 18.부터 2013. 5. 15.까지(이후 2013. 6. 15.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B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C로부터 '현장설명 공내역서'(이하 '공내역서'라 한다)를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공사대금은 공내역서에 기재된 토사, 풍화암과 연암의 물량에 공정별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직접공사비와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등 간접공사비를 합산하여 산정되었다.

나. B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후인 2013. 3. 23.경 원고에게 토사, 풍화암과 연암의 실제 물량이 기재된 설계도면을 교부하였다. 설계도면에 기재된 물량은 공내역서와 비교하여 토사가 540,000m³에서 224,294m³로, 풍화암이 1,000,000m³에서 32,208m³로 감소하였고 연암이 2,860,000m³에서 4,145,600m³로 증가하였다.

원고는 계약단가가 높은 연암의 실제 물량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B에 공사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은 거절하였다. B은 2013. 6. 10. 원고에게 원고가 2013. 6. 7.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2013. 6. 12.자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후 B은 직접 공사를 진행하여 2013. 10. 22.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6. 2. 4. B을 흡수합병하였다(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2. 판단누락과 기판력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고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에 작용한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3다4349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3. 3. 11.부터 2013. 6. 5.까지 피고에게 기성 공사대금으로 합계

9,099,463,395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3. 3. 11.부터 2013. 6. 14.까지 원고 또는

재하수급인들에게 재하수급인들이 가압류한 68,160,465원을 포함하여 합계 9,099,463,395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2.부터 CU 주식회사(이하 'CU'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고, 2013. 4. 15.

CU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원고가 CU에 미지급한 유류대금 전부를 양도하였다.

CU는 원고를 대신하여 2013. 5. 22.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2013. 5.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CU는 2013. 7. 29. 피고를 상대로 유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합1951,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CU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하였다. 피고는 원고 또는 재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한

9,099,463,395원 중에서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2013. 5. 23. 이후 재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한

2,247,648,090원과 원고에게 지급한 9,579,350원을 CU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범위에서 CU에 양수금 993,330,689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법원은 2014. 5. 1. 피고가 CU에 9,579,35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CU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9. 26. 추가로

피고가 CU에 68,160,46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5858). 항소심 판결은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 1. 20.자 2014다71101 판결).

제1심과 항소심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피고가

재하수급인들에게 노무비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재하수급인들이 채권양도 통지 전

원고에게 노무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재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부분을 CU에 대항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2013. 6. 14. 원고에게 지급한 9,579,350원은 그 시점이 채권양도 통지 후이고,

재하수급인들이 가압류한 68,160,465원은 피고가 직접 지급할 성격의 것으로 CU에 대항할 수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합계액 77,739,815원에 대해 피고가 CU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CU에 77,739,81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는 2016. 5. 9. CU와 채권양도계약을 해지하고 CU가 원고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기로 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2013. 6. 5. 주식회사 H에 1,100,000,000원, 2013. 6. 14. I에게 1,012,130,290원 등 합계 2,112,130,290원을 양도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이미 지급받은 9,099,463,395원과 주식회사 H와 I에게 양도한 2,112,130,290원 등 합계 11,211,593,685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하였다. 원심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정한 공사대금 13,226,419,848원 중 위 합계액을 제외한 나머지 2,014,826,163원을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상계 항변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CU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하고 선행 소송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범위에서 양수금을 청구하여 피고가 대항할 수 없는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공사대금채권 중 선행 소송에서 인용된 부분과 기각된 부분을 포함한 기지급 공사대금과 주식회사 H와 I에게 양도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선행 소송의 소송물이 이 사건의 소송물과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석(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정산을 예정하지 않은 이른바 총액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토석별 물량 변경이 공사내용 변경에 해당하여 원고가 추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4조는 공사내용 변경과 그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을 예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는 건축할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석을 제거·운반하는 것으로 제거·운반해야 할 토석의 물량 자체가 공사 내용이 된다. 연암은 토석별 흙깎기 공정의 계약단가가 m³당 1,710원으로 m³당 475원인 토사의 3배가 넘고, 토사나 풍화암과 달리 화약을 이용해 파쇄해야 하는 등 토석별 물량 변경이 공사내용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한다. 설계도면의 토석별 물량은 공내역서와 비교하여 토사와 풍화암이 합계 1,283,498m³ 적고 연암이 1,285,600m³ 많다.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도면에 따른 공사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공사를 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4조는 제1항에서 공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에 대해 피고가 발주처인 C와 조정한 금액에 한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C와 공사대금을 조정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C에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거나 협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공사대금을 증액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시공물량과 공사대금 산정의 적법 여부(상고이유 제3, 4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원고가 시공한 물량과 공사대금을 산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로 시공된 연암 물량은 설계도면과 같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N는 C로부터 F 건설공사의 토목설계를 용역대금 1,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라 준공되었고 공사 과정에서 설계도면의 오류가 나타나거나 설계도면이 변경되지 않았다.

원고는 설계도면에 기재된 토사와 풍화암 공사를 마쳤다. 연암의 경우 원고는 연암 절토에 사용된 총 화약량 중 약 83.78%를 사용하였으므로, 설계도면의 연암 물량 4,145,600m³ 중 83.78%인 3,473,153m³를 원고가 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K 주식회사는 원고가 시공한 물량을 다르게 산정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일방적으로 K 주식회사를 측량업체로 선정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보고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시공 물량에 계약내역서에 기재된 토석별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동원

주심대법관김재형

대법관민유숙

대법관노태악